

'25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 시험 적성·신체·체력검사 일정 및 유의사항 공고

2025년 상반기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적성·신체·체력검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18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1 일정 안내

구 분	일 자	집결장소	주 소
적성검사	7. 26.(토) 09:00 ~ 13:00 * 집결시간 08:30	목포애향중학교	전남 목포시 남악2로 22번길 28-7
신체 및 체력검사	7.29.(화) 09:30 ~ 18:00 * 집결시간 채용분야별 상이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전남 무안군 현경면 공항로 345

※ **집결시간 미준수자 응시불가**, 진행시간은 현장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적성검사 상세 일정

- ☐ **일시/장소** : '25. 7. 26.(토) 09:00, 목포애향중학교[붙임 1] 참조
- ☐ **입실시간** : ' 25. 7. 26.(토) 08:30 (**입실시간 미준수자 응시 불가**)
 - ※ 입실시간 08:00~08:30분, 08:30분 이후 검사실 입실 불가
- ☐ **대상** : '25년 상반기 채용 실기·필기시험 합격자
 - 분야 : [순경] 공채(남), 공채(여), 구조, 구급, 특공(전술)

□ **평가내용**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적성 검정(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적성검사 준비물** : 신분증(미소지자 응시불가)*, 응시표,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 수정테이프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기간
만료 전 여권(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
으로 인정되지 않음), 응시접수 후 개명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필참

□ **상세 시간표**

검사항목	소 요 시 간	
적성검사	09:00 ~ 10:30	90분
휴 식	10:30 ~ 10:50	20분
인성검사 I	11:00 ~ 12:00	60분
휴 식	12:00 ~ 12:20	20분
인성검사 II	12:30 ~ 13:00	30분

□ **유의사항**

- 신분증 미지참 및 입실시간 미준수 시 검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풀이 시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적성시험의 특성상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을 포함한 퇴실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 답안지는 OMR로만 판독하므로 답안지의 모든 기재 및 표기사항을 정확히 준수하고, ‘컴퓨터용 흑색사인펜’ 으로만 작성해야 합니다.
- 예비 답안 체크 등도 OMR 판독기가 이중답안으로 인식하거나, 판독기 인식이 불가한 경우 무효처리됩니다.
- 검사장 내에서는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검사 장면 및 검사지 등을 촬영할 수 없으며, 응시자 외에는 검사장 출입을 금지합니다.
- 기타 상세한 주의사항은 검사 당일 감독관의 공지에 따릅니다.

3 체력 · 신체검사 상세 일정

- 일시/장소 : '25. 7. 29.(화) 09:30,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붙임 2 참조]
- 대상 : '25년 상반기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 분야 : [순경] 공채(남), 공채(여), 구급 * 구조, 특공(전술) 제외, 既 실시
- 평가내용 :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00m달리기, 50m수영
- 준비물 : 신분증(미소지자 응시불가)*, 응시표, 운동복(수영복, 수영모, 수영 등 포함), 운동화(스파이크화 착용 불가), 개인세면용품 등
 -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기간 만료 전 여권(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학생증, 자격수첩, 공무원증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음), 응시접수 후 개명한 경우 주민등록초본 필참

□ 응시분야별 상세일정

- 집결시간 30분 전부터 접수등록 가능(집결시간 미준수자 응시 불가)

일 자	집결시간	응시분야	응시번호
7. 29.(화) 오전 육상종목 (집결장소 - 실내체육관)	09:30	공채(남)	30120001~30120067
		공채(남)	30120071~30120115
		구급	30420014, 30420028
	10:30	공채(남)	30120118~30120199
		구급	30420032,30420039,30420041,30420045,30420047,30420051,30420058
		공채(여)	30220007~30220055
		구급	30420019,30420044,30420060
7. 29.(화) 오후 50m 수영 (집결장소 - 실내수영장)	13:30	공채(남)	30120001~30120135
	14:30	공채(남)	30120149~30120199
		공채(여)	전체
		구급	전체

※ 체력검사 종목 합격 여부에 따라 일정별 응시인원 변동 가능

□ 신체검사

- **검사항목** : 체격, 문신에 대해서만 현장에서 확인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의 평가기준[붙임 3]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세부기준[붙임 4] 참조
- **합격 결정** : 체격만 현장에서 합격여부 판정
 - 서류전형 단계에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체·체력검사서[붙임 5]와 국·공립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의 결과(질환·시력·색안·청력·혈압)를 종합적으로 판단

□ 체력검사

- **검사항목** : 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100m달리기, 50미터 수영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붙임 6]에 및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체력검사 종목별 평가방법[붙임 7] 참조
- **합격 결정** : 종목별 합격여부는 현장에서 고지
 - 검사 항목 총점(40점)의 40퍼센트(16점) 미만자는 불합격
 - 체력검사 종목 중(수영 제외) 한 종목 이상 1점 평가를 받은 경우 불합격
 - 50미터 수영의 경우 기준(남자 130초 이내, 여자 150초 이내) 미달 시 불합격

□ 신체·체력검사 응시자 유의사항

- **집결시간에 접수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신분증 미지참자 및 집결시간 까지 접수등록을 하지 못한 응시자는 응시가 불가합니다.**
- 체력검사 일정은 현장 조편성에 따라 응시분야 내에서 응시자별 실시 순서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지된 일정 및 종목순서 등은 날씨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체력검사의 종목별 측정은 1회에 한하며 재측정 불가 원칙입니다. 단, 본인의 책임을 벗어난 특정한 사정(장비불량 및 他응시자의 방해 등)이 있는 경우 또는 재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우는 현장 시험관계자의 판단에 따라 재측정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측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1회에 한합니다.

※ (예) 100m 달리기에서 부정출발 1회 후 재측정 시 넘어진 경우는 실격 처리

-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특정단체(학원, 군 부대, 학교 등)를 나타낼 수 있는 복장 착용은 금지하며, 금지복장 착용 시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 체력검사 실시 중 **한 종목이라도 실격**이 되거나, **미응시** 및 **기권한 경우에는 다음 종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7.29.(화) 50m 수영평가 후 응시자 총원은 신체검사를 수검하여야 하며, 미수검자는 신체검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체검사 중 **문신을 감추기 위해** 「문신 커버 스프레이, BB크림, 셀프 태닝크림」을 덧바르는 등 고의로 은닉한 경우는 **부정행위로 처리**되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제38조에 따라 **당해 시험은 무효처리** 되고, 5년간 동 영에 따른 신규채용시험에 응시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일부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부정 약물 사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29.(화) 체력검정 종료 후 도핑테스트(응시자 5%내외)를 실시할 예정이며, 도핑대상자로 선정된 응시자는 반드시 도핑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미수검 시 도핑검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실격처리합니다.
- 검사장에는 응시자만 출입 가능하며, 응시자를 제외한 일반인(가족, 지인, 학원 관계자 등)의 출입 및 참관은 불가합니다.
- 체력검사 과정에서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부상에 대해 책임지지 않으니 시험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와 관련하여 사전 허가된 내용 외의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은 불가하며, 촬영된 영상 및 사진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검사 진행을 위한 시험관계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검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즉시 퇴장 조치할 수 있습니다.
- 검사장 입장 시 안전관리를 위한 영상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검사종료 후 폐기)
- 신체·체력검사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모든 공지·안내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4 면접시험 일정 안내

□ 기 간 : '25. 8. 19.(화) ~ 8. 26.(화)

- 상세일정 등 안내 사항은 해양경찰청, 각 지방해양경찰청 홈페이지 및 통합채용포털(<https://career.gosi.kr>)에 '25. 8. 11.(월) 10:00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붙임 1

적성검사장 장소 안내

- 일 시 : 2025. 7. 26.(토) 09:00 ~
- 집결시간 : **2025. 7. 26.(토) 08:30까지**(입실시간 : 08:00~08:30)
※ 해당 시험실은 검사장에서 확인가능, 집결시간 기준은 시험실 입실시간입니다.
- 장 소 : **목포애향중학교** * 목포시 남악2로22번길 28-7
- 응시대상 : [순경] 공채(남, 여), 구조, 구급, 특공(전술)
- 준 비 물 : 신분증, 응시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 유의사항 : **집결시간 미준수자 적성검사 응시 불가**
- 대중교통 : [택시] 목포버스터미널 20분, 목포역 30분 소요
[버스] 목포버스터미널 1, 2, 2-1, 3, 66-1, 77, 77-1번(30~40분 소요)
목포역 1, 2, 2-1, 3, 10, 66, 77, 77-1, 88번(40~60분 소요)
- 안내사진(**교통이용편, 이동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주차공간 협소로 정문주차통제, 수험생 절대주차 불가, 대중교통 이용요망

붙임 2

체력·신체검사장 장소 안내

- 일 시 : 2025. 7. 29.(화) ※ 분야별 집결시간 준수
- 장 소 :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 * 무안군 현경면 공항로 345
- 응시대상 : [순경] 공채(남, 여), 구급
- 준 비 물 : 신분증, 응시표, 운동복, 수영복(수경, 수모, 수건 등)
- 유의사항 : **집결시간 미준수자 체력검사 응시 불가**
* 도핑테스트 대상자는 7. 29.(화) 09:30 일괄 추첨
- 대중교통 : [택시] 무안공용버스터미널 옆 택시 승차장에서 약 10분 소요
- 무안개인택시조합(061-453-2134), 어플 이용 호출가능
[버스] 무안군 농어촌 버스 이용 시 약 10분 소요(버스시간표 참조)
- 무안공용버스터미널에서 출발(무안교통 : 061-454-1040)
- 개인차량 : 함평IC / 무안IC →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약 10분
목포IC →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약 30분
- 안내사진(교통이용편, 이동소요시간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버스시간표

무안군 농어촌 버스 시간표	
<무안버스터미널 →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운남/신월/성내/영해 방면	해제/양월/도리포 방면
08:50 영해(스포츠파크 경유)	10:30 해제(스포츠파크 경유)
	12:20 해제(스포츠파크 경유)
<무안종합스포츠파크 → 무안버스터미널>	
1시간에 3~4회 운행(배차간격 약 15분)	

- ※ 목포버스터미널 → 무안공용버스터미널까지 시외버스 이용시 약 40~60분 소요
- ※ 대중교통 이용 시 출발지연 및 차량부족으로 인한 집결시간 미준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사전에 소요시간 및 교통편 확인 바랍니다.
- ※ 개인차량 이용자는 무안종합스포츠파크 내에 주차 가능하니(주차장에서 실내체육관, 실내수영장 까지 약 5분 소요) 개인별 집결시간 감안하여 도착바랍니다.

붙임 3

신체검사의 평가기준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4]
신체검사의 평가기준(제28조제1항 관련)

구분	내용 및 기준
체격 및 질환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팔다리는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色神)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신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문신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비고 : 체격 항목 중 팔다리가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붙임 4

신체검사의 세부기준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1]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세부기준(제6조제1항 관련)

평가항목	내 용	신체검사기준(불합격 판정기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 가능한 상태	팔다리와 손·발가락	팔다리와 손·발가락이 강직, 절단 또는 변형된 기형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진단을 받지 못한 사람
	척추만곡증 (허리휘는 증상)	X-RAY촬영 결과 20도 이상 허리가 기울어져 있는 자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상지관절의 정상여부	상지 3대 관절(손목·팔꿈치·어깨관절)을 앞과 위 아래로 이동시 자연스럽게 지 않은 사람 중 상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하지관절의 정상여부	하지 3대 관절(발목·무릎·고관절)을 좌우로 돌리는 것이 자연스럽게 지 않은 사람 중 하지의 3대 관절이 불완전하거나 관절의 기능 손실이 15퍼센트 이상이거나 3대 관절의 손실 합이 15퍼센트 이상으로 정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정상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붙임 5

신체·체력검사서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3] 신체·체력검사서(남자용)

신체 · 체력검사서(남자용)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 명	
------	--	------	--	-----	--

○ 신체검사 항목

항목	기 준	결과	확인	판정
체격	팔다리가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문신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질환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대체		
시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각 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체력검사 항목

항 목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득점	확인	판정
100m 달리기(초)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후		(서명)	
기 록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 55	54~ 51	50~ 46	45~ 40	39~ 36	35~ 31	30~ 25	24~ 22	21 이하		(서명)	
기 록													
팔굽혀펴기 (회/1분)	58 이상	57~ 54	53~ 50	49~ 46	45~ 42	41~ 38	37~ 33	32~ 28	27~ 23	22 이하		(서명)	
기 록													
좌우약력 (kg)	61 이상	60~ 59	58~ 56	55~ 54	53~ 51	50~ 48	47~ 45	44~ 42	41~ 38	37 이하		(서명)	
기 록													
수 영(초)	130초 이내											(서명)	
기 록													
총 점											점		
검사관	(인)						판정관	(인)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지 3] 신체·체력검사서(여자용)

신체·체력검사서(여자용)

응시분야		응시번호		성 명	
------	--	------	--	-----	--

○ 신체검사 항목

항목	기 준	결과	확인	판정
체격	팔다리가 해양경찰 직무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장구의 사용이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문신	시술 동기, 의미 및 크기에 비추어 볼 때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질환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 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대체		
시력	시력(교정시력 포함)은 각각 0.8이상이어야 한다.			
색신	정상 또는 색약(약도)이어야 한다. 다만, 항공·항해분야는 정상 색각 이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혈압	고혈압[수축기 혈압이 145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저혈압[수축기 혈압이 9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수은주밀리미터(mmHg) 미만인 것을 말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 체력검사 항목

항 목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득점	확인	판정
100m 달리기(초)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후		(서명)	
기 록													
윗몸일으키기 (회/1분)	55 이상	54~ 50	49~ 45	44~ 40	39~ 35	34~ 30	29~ 25	24~ 19	18~ 13	12 이하		(서명)	
기 록													
팔굽혀펴기 (회/1분)	31 이상	30~ 28	27~ 25	24~ 22	21~ 19	18~ 16	15~ 13	12~ 10	9~ 7	6 이하		(서명)	
기 록													
좌우약력 (kg)	40 이상	39~ 38	37~ 36	35~ 34	33~ 31	30~ 29	28~ 27	26~ 25	24~ 22	21 이하		(서명)	
기 록													
수 영(초)	150초 이내											(서명)	
기 록													
총 점											점		

검사관	(인)	판정관	(인)
-----	-----	-----	-----

붙임 6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 5]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체력검사의 평가기준과 방법**(제28조제2항 관련)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 자	100미터 달리기(초)	13.0 이하	13.1 ~13.5	13.6 ~ 14.0	14.1 ~ 14.5	14.6 ~ 15.0	15.1 ~ 15.5	15.6 ~ 16.0	16.1 ~ 16.5	16.6 ~ 16.9	17.0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58 이상	57 ~55	54 ~51	50 ~46	45 ~40	39 ~36	35 ~31	30 ~25	24 ~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58 이상	57 ~54	53 ~50	49 ~46	45 ~42	41 ~38	37 ~33	32 ~28	27 ~23	22 이하
	좌우악력 (kg)	61 이상	60 ~59	58 ~56	55 ~54	53 ~51	50 ~48	47 ~45	44 ~42	41 ~38	37 이하
	50미터 수영(초)	130초 이하									
여 자	100미터 달리기(초)	15.5 이하	15.6 ~16.3	16.4 ~ 17.1	17.2 ~ 17.9	18.0 ~ 18.7	18.8 ~ 19.4	19.5 ~ 20.1	20.2 ~ 20.8	20.9 ~ 21.5	21.6 이상
	윗몸 일으키기 (회/60초)	55 이상	54 ~50	49 ~45	44 ~40	39 ~35	34 ~30	29 ~25	24 ~19	18 ~13	12 이하
	팔굽혀펴기 (회/60초)	31 이상	30 ~28	27 ~25	24 ~22	21 ~19	18 ~16	15 ~13	12 ~10	9 ~7	6 이하
	좌우악력 (kg)	40 이상	39 ~38	37 ~36	35 ~34	33 ~31	30 ~29	28 ~27	26 ~25	24 ~22	21 이하
	50미터 수영(초)	150초 이하									

비고

1. 100미터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및 좌우악력 중 한 종목 이상에서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2. 100미터 달리기의 경우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3. 좌우악력의 경우 좌우 각각 측정된 수치 중에서 최대값으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4. 50미터 수영의 경우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린 수치를 기준으로 남자 130초, 여자 150초 이하인 경우 해당 종목을 합격한 것으로 보며, 체력검사 점수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 시간 이내에 완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5.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붙임 7

체력검사 종목별 평가방법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규칙」 [별표 4]
체력검사 종목별 평가방법(제6조제2항 관련)

종목	측정방법 등
100m 달리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1) 100m 직선주로 2코스 이상 2) 계측기 2개 3) 출발신호기 1개 4) 2인 1조가 동시에 출발할 때 중간 코스는 공간으로 둔다. 다. 측정방법 1) 측정시간은 1/10초 단위로 한다. 2) 중도에서 넘어졌을 때는 1회에 한하여 다시 달리게 한다. 라. 기록 1)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수기로 측정할 수 있다. 2) 수기 계측원은 출발신호기가 땅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주자의 몸통이 결승선 위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10초 단위로 계속 기록한다. 단, 넘어졌을 때는 몸통의 일부가 결승선 상에 있을 경우는 유효하다.
악 력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 나. 실시도구 악력기 다. 측정방법 악력기에 의한 기계측정을 한다. 라. 기록 왼손, 오른손 각 2회씩 총 4회를 실시하여 최댓값을 기록한다.
윗몸일으키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1) 윗몸일으키기대 2) 계측기(1대 이상) 다. 측정방법 1)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수기로 측정

종목	측정방법 등
	할 수 있다. 2) 양발을 30cm 정도 벌려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각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 3) 측정횟수는 상체를 일으켜서 양쪽 팔꿈치가 양 무릎에 닿은 다음, 다시 누운 자세로 돌아갔을 때 1회로 하고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라. 기록 1) 정확한 동작으로 1분 동안에 실시한 횟수를 기록한다. 2) 운동속도는 자유로이 한다. 3) 실시 도중 목뒤에 각지를 낀 손이 빠지거나 몸을 앞으로 굽혔을 때 팔꿈치가 무릎에 닿지 않으면 그 횟수는 무효로 한다.
팔굽혀펴기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기록원 1명 이상 3) 검사원 1명 이상 나. 실시도구 매트, 계측기(1대 이상) 다. 측정방법 1) 전자측정기 측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수기로 측정할 수 있다. 2) 양손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3)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몸(머리~다리)과 봉 간격이 5cm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 한다. 4) 전자측정기기로 실시할 수 있다. 라. 기록 : 1분 내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수영	가. 검사요원 1) 계측원 1명 이상 2) 출발신호원 1명 3) 기록원 1명 이상 나. 시설기구 1) 50m 수영장 (25m 수영장 왕복 가능) 2) 초시계(1개 이상) 3) 출발신호기 1개 다. 측정방법 1) 수영장 레인을 사용한다. 2) 측정시간은 초 단위로 한다. 라. 기록 계측원은 출발신호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응시자의 신체의 일부가 도착지점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초 단위로 계측하여 정확히 기록한다.

비고 : 체력검사 종목의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